

『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‘구미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 규정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,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 근거 마련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총괄건축가 1명, 공공건축가 20명 이내 위촉(비상근직 임기2년)

나. 민간전문가의 업무 및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
- 주요업무 : 시장이 발주하는 건축 및 도시의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·설계·시공·유지관리에 대한 조정·자문
- 주요대상 :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설계비 5천만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

다. 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, 준수사항, 해촉, 보수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
- 건축 뿐 아니라 도시,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도시공간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미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
- 일관성 있는 공간환경 정책 추진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실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